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80

발의연월일: 2022. 6. 15.

발 의 자:양정숙·강민정·김수흥

김승남 • 박주민 • 안호영

위성곤 • 윤재갑 • 윤준병

이용빈 · 최연숙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이에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과 국민 법감정 및 관련 법규의 처벌

수준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 여부를 불문하고 10년 이내에 2회 이상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5년 초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합헌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을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하고 5년 초과 1 0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제2항제3호의 죄를 범하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8조2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제14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 제148조의2(벌칙) <u><삭 제></u> |
|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 |
|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 |
| 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 |
|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 |
|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 <u>①</u> |
|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 |
|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 |
|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 | |
| 하지 <u>아니하는</u> 사람(자동차등 | <u>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u> |
|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 | 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
| <u>람으로 한정한다)은</u> 1년 이상 |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 |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 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 |
|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u>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u> |
| 처한다. | |
| <u>③</u> · <u>④</u> (생 략) | $\underline{2} \cdot \underline{3}$ (현행 제3항 및 제4항 |
| | 과 같음) |
| <u> <신 설></u> | ④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부터 |
| | 제3호까지의 죄를 일정한 기간 |

-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 중처벌한다.
- 1.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하고 5년 초과 10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제2항제3호의 죄를 범한 사람과 제2항제3호의 죄를 범하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